

한국소비자원정관

제정 1987. 6.10
 개정 1988.12.22
 1991. 1. 1
 1993. 6.15
 1994. 4. 8
 1994. 9.30
 1996. 3.29
 1997. 3.28
 1999. 4.28
 2001. 3.29
 2001. 7.19
 2004. 2.26
 2007. 3.20
 2007. 5. 1
 2008. 5.29
 2010. 8.16
 2010.11.12
 2011.12.12
 2013. 6.14
 2014. 8.2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07.3.28>

제2조(목적)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3.28>

제3조(사무소) ① 소비자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둔다. <개정 '14.8.26>

②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4.28> <개정 '07.3.28>

제2장 업 무

제4조(업무) ① 소비자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07.3.28>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 소비자원이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07.3.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개정 '07.3.28>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설 '99. 4.28> <개정 '07.3.28>
3.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구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경우의 당해 피해구제 <신설 '99. 4.28> <개정 '07.3.28>

③ 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 3.29> <개정 '99. 4.28> <개정 '07.3.28>

제5조(경영공시 등) ① 소비자원은 경영의 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경영상황을 공시하고 고객서비스 현장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07.3.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경영공시 및 고객서비스 현장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01. 3.29]

제6조(위원회 등의 설치) ① 원장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07.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로 정한다. [본조신설 '01. 7.19]

제7조(검사의 의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② 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9. 4.28>

제8조(사업계획) ① 소비자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② 제1항 전단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12월 1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소비자원에 원장·부원장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원장·부원장·소장 및 원장이 상임으로 임명한 이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96. 3.29> <개정 '99. 4.28> <개정 '07.3.28> <개정 '10.8.16>

② 원장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③ 부원장 및 상임이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은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개정 '94. 4. 8> <개정 '96. 3.29> <개정 '99. 4.28> <개정 '04. 2.26> <개정 '07.3.28> <개정 '08.5.29> <개정 '10.8.16>

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개정 '07.5.1> <개정 '08.5.29>

제10조 (임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07.5.1>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소비자원을 대표하고 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07.3.28>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8.12.22> <개정 '96. 3.29> <개정 '07.3.28>

③ 소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원장·부원장 및 소장이 아닌 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 1. 1> <개정 '96. 3.29> <개정 '07.3.28>

④ 감사는 소비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07.3.28>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비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07.3.2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10.8.16>
3. 삭제<'10.8.16>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개정 '07.3.28>

1. 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 정관을 위반한 때 <개정 '07.3.28>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개정 '07.3.28>
4.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 '07.3.28>

제14조(임원과 직원의 겸직제한) ① 소비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소비자의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개정 '13. 6.14>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소비자의 이익과 원장, 부원장, 소장 및 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부원장·소장 또는 해당 상임이사는 소비자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소비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07.3.28>

제17조(직원의 임면) 소비자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07.3.28>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소비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안전

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6. 3.29> <개정 '99. 4.28> <개정 '07.3.28> <개정 '13. 6.14>

제19조(고문) 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① 소비자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07.3.28>

② 이사회는 원장·부원장·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및 의결 등) ① 이사회 회의는 원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13. 6.14>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당연직 이사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4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4. 2.26>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원의 사업계획 및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개정 '07.3.28>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8.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중요계약의 체결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개정 '96. 3.29> <개정 '07.3.28>
11.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서면의결) 원장은 이사회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소비자안전센터

제25조(설치) 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07.3.28]

제26조(조직) 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안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수집·평가부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연구부서 등을 둔다. [본조신설 '07.3.28]

제27조(업무) 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07.3.28]

제28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 안전센터의 위해정보 수집·처리 등 업무 절차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07.3.28]

제6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29조(설치) 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07.3.28>

제30조(의결사항)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개정 '07.3.28>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07.3.28>

제31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96. 3.29> <개정 '99. 4.28> <개정 '01. 7.19> <개정 '07.3.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 4.28> <개정 '01. 7.19> <개정 '07.3.2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개정 '07.3.28>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개정 '96. 3.29> <개정 '07.3.28>
3.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01. 7.19> <개정 '07.3.28>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3.28>

⑥ 원장은 제1항의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2인 이상 균등하게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6.3.29> <개정 '99.4.28>

제32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3.29> <개정 '01. 7.19> <개정 '11.12.1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96. 3.29> <개정 '01. 7.19> <개정 '11.12.12>

1. 분쟁조정회의 :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신설 '01. 7.19> <개정

'11.12.12>

1. 분쟁조정회의 : 위원장
2. 조정부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11.12.12]

1. 제30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합의권고 금액 200만원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30조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제54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11.12.12>

제33조(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96. 3.29> <개정 '11.12.12>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원장이 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개정 '11.12.12>

제34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1.12.12>

제35조(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전문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당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07.3.28>

④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7.3.28>

제37조(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제12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개정 '07.3.28>

제38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07.3.28>

제3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07.3.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07.3.28>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07.3.28>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07.3.28>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07.3.2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의 수당 등) ① 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주무관청의 의견 등을 들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견진술자에 대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제7장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개정 '11.12.12>

제42조(피해구제 신청 등의 처리) ①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해구제신청·의뢰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96. 3.29> <개정 '01. 7.19> <개정 '07.3.28>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청·의뢰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07.3.28>

제43조(검사 및 자료제출요구) ① 소비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96. 3.29> <개정 '99. 4.28> <개정 '07.3.28>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 [신설 '07.3.28]
2. 소비자원에 신청·의뢰된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07.3.28]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원의 직원에게는 법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제44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 신청·의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07.3.28] <개정 '11.12.12>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45조(합의권고) 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07.3.28>

② 제1항의 합의권고는 당사자의 상담을 통하여 행한다.

③ 제2항의 상담결과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원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7.3.28>

제46조(피해구제 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 관련 사건
4.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사건

[본조 신설 '07.3.28] <개정 '10.11.12>

제46조2(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1.12.12]

② 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1.12.12>

제47조(분쟁조정) ① 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 처리기간 내에 당사자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6. 3.29> <개정 '07.3.28>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8조(위원장의 합의권고) 위원장은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3.29] <개정 '07.3.28>

제49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제47의 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07.3.28>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시기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의견청취 3일전까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당사자 출석에 관한 특례)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으로 조정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개정 '07.3.28>

제51조(분쟁조정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07.3.28>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7.3.28>

제52조(조정결정) ① 위원장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07.3.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7.3.2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6. 3.29> <개정 '07.3.28>

제53조(분쟁조정 중지) 제46조2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07.3.28> <개정 '11.12.12>

② <삭제 '11.12.12>

제54조(분쟁조정 특례)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07.3.28] <개정 '11.12.12>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소비자
 -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② 전항의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조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1.12.12>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55조(재원) 소비자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신설 '07.3.28]
2. 그 밖에 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신설 '07.3.28]

제56조(회계연도) 소비자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07.3.28>

제57조(예산) ① 소비자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② 제1항 전단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12월1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제58조(결산) ① 소비자원은 매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개정 '08.5.29>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개정 '07.3.28>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개정 '07.3.28>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기타 참고서류

제59조(잉여금의 처리)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연도의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6. 3.29> <개정 '07.3.28> <개정 '08.5.29>

제9장 보 칙

제60조(정관의 변경) 소비자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4.28> <개정 '07.3.28>

제61조(내부규정의 제·개정) 소비자원이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7. 3.28] <개정 '07.3.28>

제62조(공고) 소비자원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개정 '07.3.28>

제63조(위임규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소비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7.3.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호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 보호원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보호원이 설립한 날로부터 정부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비용) 보호원의 설립비용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보호원 설립후 창업

비로 계상한다.

제4조(설립위원의 주소성명) ① 설립위원의 주소성명은 다음과 같다.

② 보호원의 설립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의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위원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9-4

성 명 : 금진호

위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12-5

성 명 : 김인호

위원

주 소 :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학의리 141

성 명 : 오세민

위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신화빌라 205호

성 명 : 조남성

위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9-7

성 명 : 조기욱

위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3

성 명 : 정수웅

부 칙 <'91. 1.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수석이사(는 이 정관에 의한 부원장으로 본다.

부 칙 <'93. 6.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94. 4.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의 물가정책국장은 이 정관에 의한 국민생활국장으로 본

다.

부 칙 <'94. 9.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4월 1일 이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타규정의 폐지)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제규정관리규정 제17조의 단서규정, 위임전결규정 별표의 기획관리실 사항중 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한다.

부 칙 <'97. 3.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4.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3.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7.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2.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5.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5.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8.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11.1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12.1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6.1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8.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